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 (변경전 :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)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. 7. 17.

□ **정정 사유**

(1)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

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 → 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(2) 다른 자투자신탁 변경 사항 반영

□ **정정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집합투자기구 명칭	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 투자신탁[채권혼합]	<u>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 [채권혼합]</u>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집합투자기구 명칭	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 투자신탁[채권혼합]	<u>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 [채권혼합]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집합투자기구 명칭	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 투자신탁[채권혼합]	<u>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 [채권혼합]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기재	<u>2015.7.17. :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(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→ 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)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5.06.30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 투자신탁[채권혼합]	<u>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 [채권혼합]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모자형 구조	<u>칭기스칸퇴직연금[주식]</u> <u>칭기스칸퇴직연금[채권혼합]</u>	<u>장기성장퇴직연금[주식]</u> <u>장기성장40퇴직연금[채권혼합]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	나)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:	나)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

<p>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2) 동일종목투자 트러스트증권모투자신탁 [주식]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 자신탁[채권]</p>	<p>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통 안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) ----- 한국주택금 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 또는 <u>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 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</u> (3)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)의 시가총 액비중이10%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(<u>유가증권시장, 코스 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 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 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 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 으로 나눈 비율을1개월간 평균한 비 율로 계산하며,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</u>)투 자하는 경우</p>	<p>자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 행통안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) ----- 한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<u>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 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 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</u> (3)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 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)의 시가총액비중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(<u>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 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 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 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 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 음 1개월간 적용</u>)투자하는 경우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 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 용</p>	<p>-</p>	<p><u>다른 자투자신탁 변경 사항 반영</u></p>